

축산물등급소식

'98 7 월호

축산물등급제는
생산자에게는 사양지표를!
유통업자에게는 판매지표를!
소비자에게는 구매지표를!

● 비매물 통권 제23호 ● 발행일: '98년 7월 1일 ● 발행처: 축산물등급판정소 ● 주소: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7-7 ● 전화: (02)574-2541 FAX: (02)574-2544

축산물등급화거래지역 확대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이 서울, 6대광역시 및 9개도의 14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림부 고시에 의하면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은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를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98.7.1과 '99.1.1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돼지도체 등급화거래지역은 도청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99.1.1부터 시행된다.

구분	소	돼지	
현행	서울, 6대광역시 및 9개도의 76개 시군	서울, 6대광역시 및 2개도의 5개 시군	
확대	'98.7.1	6개도의 41개 시군	-
	'99.1.1	4개도의 27개 시군	6개도의 11개시
	소계	8개도의 68개 시군	6개도의 11개시
계	서울, 6대광역시 및 9개도의 144개 시군	서울, 6대광역시 및 7개도의 16개 시군	

고시지역이 확대되면 소도체 등급판정 비율은 '98. 3월 기준 93%에서 94%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의 경우 76%에서 8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8면>

축산물등급판정작업장 조기 지정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규 고시지역인 강원 강릉시 강경산업이 축산물등급판정작업장으로 조기 지정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98.7.1부터 등급판정을 조기 실시코자 하는 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등급판정사 1명을 배치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경남 함양소재 함양축산도축농협인도 '98.7.1부터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농림부는 최근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대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돼지도체 등급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기로 했다.

개정된 등급기준은 돼지 A등급 도체중량의 경우 박피는 69~82kg, 탕박은 76~90kg으로 하한선을 조정하였으며, 등지방두께는 박피 10~20mm, 탕박 15~25mm로 조정했다.<관련기사 6, 7면>

한우고기 일본에 수출

생우수출에 이어 한우고기가 해외에 수출되었다. 축협중앙회는 일본 메이지야산업을 비롯해 산와물산, 미쯔이 상사, 후지요시아 등 일본 식육유통업체를 통해 국내산 한우고기를 수출하기로 하고 시험수출분 31두를 지난 18일 선적했다.

이번 수출되는 한우고기는 축협 안성목장에서 수송아지를 선발, 거세시킨후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한 평균체중 630kg 한우에서 생산된 최고 수준의 것이며, 도축가공작업은 수출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경북 고령의 축협공판장에서 진행됐다.

소 시가수매제로 전환

소 수매제도가 '98.6.16부터 시가수매제로 전환되고, 500kg이상 큰 소뿐만 아니라 300kg대의 중간크기의 소도 수매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500kg 수소 기준으로 220만원인 수매가가 시세에 맞게 200만원으로 낮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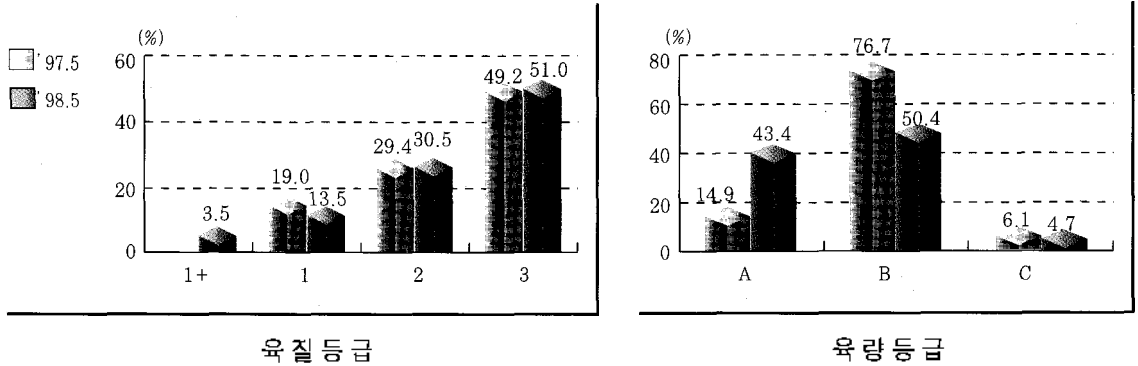
농림부는 이와함께 장마철 비수기의 소값 안정을 위해 수매육 방출물량을 현재 1일 320~350마리 수준에서 200마리로 축소하고, 젖소 수소 수매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도체 등급판정결과('98년 5월)

'98년 5월의 등급판정두수는 93,232두였으며, 그중 한우는 72,117두(77.4%)였다. 한우도체의 육질 1+등급 출현율은 3.5%, 1등급 출현율은 13.5%, 2등급은 30.5%, 3등급은 51.0%로써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년동기 보다 2.0% 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육량A등급은 43.4%, B등급은 50.4%, C등급은 4.7%가 출현되어 전년동기 보다 A등급 출현율이 28.5% 포인트 증가하였다. (등급기준이 개정되어 '97. 12. 1부터 1+등급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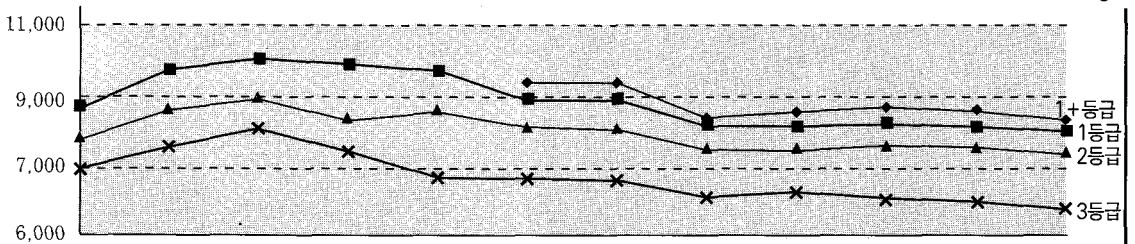
축협서울공판장의 한우도체 '98. 5월 평균 경락가격(원/kg)은 전월대비 158원이 감소한 6,861원이었고 육질 1+등급 평균가격(B등급기준)은 8,592원, 1등급은 8,218원, 2등급은 7,537원, 3등급은 5,940원으로서 전월 대비 1+등급은 129원, 1등급은 213원, 2등급은 166원, 3등급은 132원 하락하였다.

1. 한우 등급별 출현율(전국)



2. 한우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서울공판장)

(단위 : 원/kg)



등급	97. 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8. 1	2월	3월	4월	5월	6월
1+						9,276	9,216	8,314	8,552	8,721	8,592	8,235
1	8,813	9,371	9,687	9,601	9,398	8,915	8,935	8,268	8,259	8,431	8,218	8,071
2	7,953	8,616	8,953	8,498	8,719	8,267	8,338	7,535	7,597	7,703	7,537	7,437
3	7,022	7,732	8,207	7,461	7,334	6,770	6,746	6,050	6,318	6,072	5,940	5,823
총 외	5,382	5,656	5,866	5,514	5,316	4,509	5,169	4,291	4,809	3,943	3,929	3,799
평균	7,563	8,216	8,650	8,083	7,997	7,675	7,706	6,787	7,111	7,019	6,861	6,749

주) 1. B등급 기준임. 2. '98년 6월은 20일까지의 평균임

3. 도매시장별 한우 경락가격('98년 5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													
		평균	A1+	A1	A2	A3	B1+	B1	B2	B3	C1+	C1	C2	C3	등외
서울축공 (서울)	암	6,250	8,599	8,210	6,890	5,918	8,325	7,812	6,836	5,692	7,119	6,611	6,384	5,400	3,996
	수	6,173	-	8,749	8,006	6,056	-	8,232	7,902	6,009	-	-	6,535	4,809	2,844
	거세	7,645	8,915	8,622	8,017	6,363	8,655	8,345	7,975	6,315	6,702	6,502	6,269	5,751	-
태강산업 (서울)	암	5,099	-	-	-	5,500	-	7,000	5,803	5,320	-	4,500	4,999	4,502	4,327
	수	6,676	9,059	8,297	8,084	6,269	9,089	8,965	8,032	6,161	-	-	6,300	3,964	3,310
	거세	7,922	9,092	8,537	8,004	6,449	8,738	8,775	7,894	6,320	6,166	6,054	5,854	-	-
동원산업 (부산)	암	6,485	8,140	7,760	6,792	5,956	7,878	7,492	6,583	5,470	-	5,200	5,527	4,842	4,072
	수	5,757	-	8,000	6,110	4,986	-	-	6,000	5,230	-	-	-	-	-
	거세	-	-	-	-	-	-	-	-	-	-	-	-	-	-
태강산업 (김해)	암	6,516	8,637	7,551	6,729	5,851	8,363	7,389	6,642	5,550	6,300	6,306	5,634	4,749	3,455
	수	4,773	-	-	5,063	5,300	-	-	5,151	5,545	-	-	-	-	2,850
	거세	5,950	-	-	-	-	-	-	5,950	-	-	-	-	-	-
신흥산업 (대구)	암	5,850	-	-	-	-	-	-	6,300	-	-	-	-	5,400	-
	수	7,080	8,756	8,653	8,154	6,797	-	8,362	8,110	6,624	-	-	-	-	2,500
	거세	8,104	8,668	8,637	8,220	6,663	8,275	8,195	7,520	7,025	-	-	-	-	-
삼성식품 (인천)	암	5,921	-	-	7,321	6,199	7,703	7,456	6,861	5,426	-	-	5,310	5,446	3,345
	수	5,534	-	-	7,044	5,741	-	6,900	6,319	5,272	-	-	-	-	2,909
	거세	4,769	-	-	-	-	-	-	-	4,769	-	-	-	-	-
대양식품 (대전)	암	7,239	8,826	8,297	7,233	6,319	8,381	8,183	7,075	6,135	7,206	6,958	6,538	5,928	4,922
	수	7,162	-	8,630	8,237	6,354	-	8,592	7,820	6,383	-	6,825	-	-	4,695
	거세	8,388	8,684	8,648	8,256	6,265	8,722	8,600	8,040	6,500	6,760	6,733	-	-	-
축협고령 (고령)	암	5,819	-	-	-	-	-	-	-	-	6,899	-	6,001	6,500	3,877
	수	7,059	-	8,739	8,216	6,810	-	8,309	8,155	6,907	-	-	6,761	6,180	-
	거세	7,925	8,771	8,604	8,170	6,901	8,084	8,275	8,105	6,670	7,313	7,351	6,833	6,440	-
제주축공 (제주)	암	6,771	-	-	-	-	-	7,600	6,895	5,660	7,730	-	-	4,890	-
	수	7,161	8,300	7,890	7,644	6,897	7,860	-	7,060	6,356	-	-	-	-	-
	거세	7,354	7,380	7,720	-	-	7,170	-	6,73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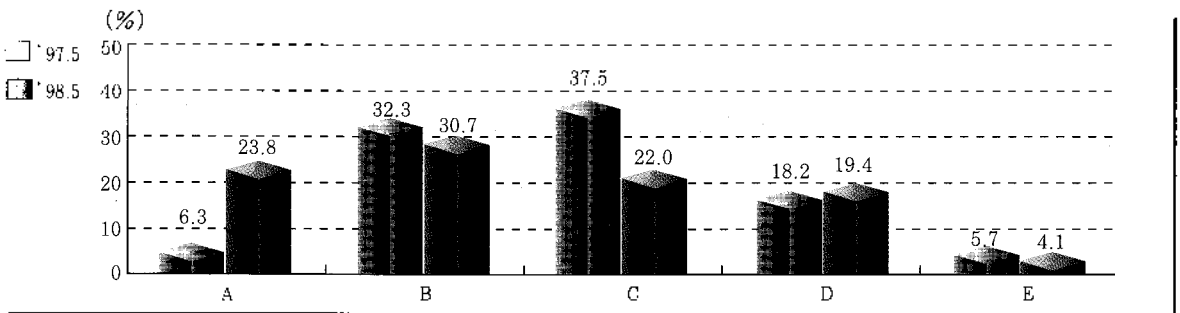
주) 평균 경락가격은 등급별 출회두수가 고려되었음.
(부산동원, 김해태강, 대구신흥산업은 부산물이 포함된 가격임)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98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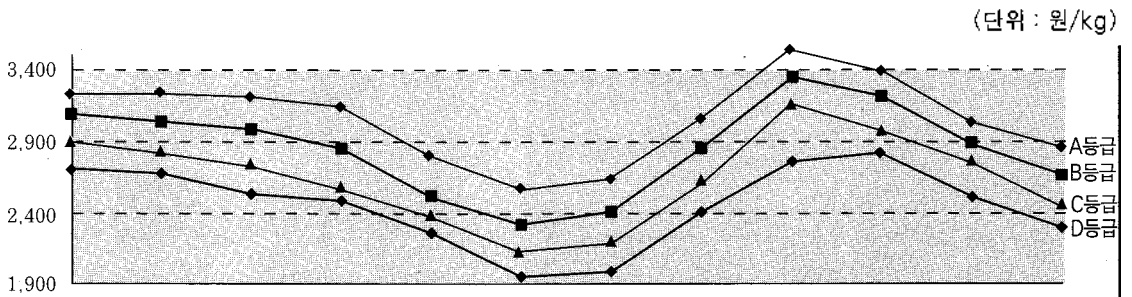
'98년 5월의 등급판정두수는 779,876두로 이중 A등급은 23.8%, B등급은 30.7%, C등급은 22.0%, D등급은 19.4%, E등급은 4.1%의 출현율을 보였으며, 상위등급(A,B등급) 출현율이 전년동기 대비 A등급은 17.5%포인트 증가, B등급은 1.6%포인트 감소하였다.(등급기준이 '97. 8. 1 개정되었음)

축협서울공판장의 돼지도체 평균경락가격(원/kg)은 전월대비 265원 하락한 2,332원이었고, 암돼지의 A등급 출현율은 18.3%, B등급은 19.9%, C등급은 8.1%, D등급은 7.0%, E등급은 11.0%였으며 암돼지 A등급 경락가격은 2,832원, B등급은 2,634원, C등급은 2,474원, D등급은 2,289원, E등급은 1,416원으로 등급간에 160~200원의 가격차를 유지하였다.

1. 등급별 출현율(전국)



2.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암돼지, 서울공판장)



등급	'97. 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8. 1	2월	3월	4월	5월
A	3,227	3,199	3,157	3,050	2,764	2,552	2,640	3,055	3,575	3,377	3,061	2,832
B	3,049	3,002	2,972	2,840	2,568	2,323	2,403	2,847	3,360	3,189	2,877	2,634
C	2,883	2,812	2,730	2,606	2,395	2,109	2,169	2,614	3,096	2,990	2,725	2,474
D	2,758	2,697	2,550	2,494	2,251	1,947	1,973	2,401	2,772	2,792	2,541	2,289
E	1,748	1,652	1,481	1,496	1,481	1,271	979	1,365	1,708	1,783	1,673	1,416
평균	2,833	2,759	2,712	2,651	2,418	2,184	2,176	2,556	2,965	2,934	2,679	2,424

3. 도매시장별 돼지 경락가격('98년 5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 별	등 급 별 경 락 가 격					
		평균	A	B	C	D	E
서울축공 (서울)	암	2,424	2,832	2,634	2,474	2,289	1,416
	수	2,060	—	2,425	2,221	1,874	1,274
	거세	2,341	2,520	2,415	2,254	1,981	1,277
태강산업 (서울)	암	2,566	2,812	2,705	2,615	2,547	1,484
	수	2,079	—	2,352	2,215	1,991	1,320
	거세	2,279	2,441	2,342	2,246	2,067	1,668
동원산업 (부산)	암	2,555	2,993	2,925	2,778	2,451	1,427
	수	2,171	—	2,437	2,379	2,071	1,202
	거세	2,407	2,521	2,475	2,326	2,138	1,863
태강산업 (김해)	암	2,444	3,057	2,892	2,663	2,388	1,494
	수	2,155	—	2,461	2,359	2,059	1,099
	거세	2,474	2,606	2,528	2,375	2,147	1,582
신흥산업 (대구)	암	2,323	2,849	2,715	2,580	2,420	1,484
	수	2,323	—	2,483	2,444	2,305	1,215
	거세	2,391	2,511	2,454	2,297	2,136	1,875
삼성식품 (인천)	암	2,616	2,927	2,769	2,572	2,403	1,529
	수	2,103	—	2,372	2,309	2,036	1,378
	거세	2,295	2,473	2,390	2,249	1,987	1,605
삼호축산 (광주)	암	2,466	2,771	2,659	2,475	2,291	1,396
	수	1,989	—	2,259	2,145	1,842	1,274
	거세	2,267	2,338	2,287	2,228	2,003	1,793
대양식품 (대전)	암	2,737	2,883	2,802	2,663	2,517	1,441
	수	2,120	—	2,239	2,190	2,091	1,358
	거세	2,366	2,351	2,450	2,278	2,326	—
축협고령 (고령)	암	2,193	2,797	2,701	2,457	2,281	1,374
	수	2,203	—	2,365	2,384	2,040	1,265
	거세	2,281	2,517	2,319	2,299	1,667	2,360
제주축공 (제주)	암	2,534	2,756	2,611	2,315	2,020	1,400
	수	2,135	—	2,325	2,164	1,909	860
	거세	2,113	2,488	2,331	2,038	1,730	1,920

주) 1. 돼지 경락가격은 박피도체 경락가격 기준임.

2. 제주축공 경락가격은 당박도체 경락가격임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개정 (농림부 고시 1998-31호, '98. 6. 17)

요 지

□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시행 : '98. 9. 1)

- 〈박피기준 A등급〉

	현 행	개 정
- 도체중량	64이상~72kg미만	69이상~82kg이하
- 등지방두께	9 ~21mm	10 ~20mm
- 〈탕박기준 A등급〉

	현 행	개 정
- 도체중량	71이상~89kg미만	76이상~90kg이하
- 등지방두께	14 ~26mm	15 ~25mm
- E등급에 대한 기준 추가
 - 비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지방이 적고 고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
 - 바베큐, 제수용 등 특수목적용으로 이등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이번에 개정된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 현행 규격돈 생체중량(105~120kg)의 돼지가 현 기준으로는 하위등급에 해당되어 양돈농가들이 규격돈 생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에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돼지 출하 체중의 규격화를 유도,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 원료돈 생산을 확대하여 돼지고기의 수출장려로 국내 양돈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

○ 개정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A등급은 규격돈 생체중량과 같게 하기 위해 도체중량의 상·하한선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A등급 박피기준의 경우 64kg이상~81kg미만을 69kg이상~82kg이하(생체중량 96~115kg이하에서 105~120kg이하)로 변경하였고 탕박기준의 경우는 71kg이상~89kg미만을 76kg이상~90kg이하로 변경하였다.
- 등지방두께의 경우는 규격돈 체중의 등지방두께와 상응하게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규격돈 출하체중의 돼지가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A등급 박피기준의 경우 9mm이상~21mm미만을 10mm이상~20mm이하로 변경하였고, 탕박기준의 경우는 14mm이상~26mm미만을 15mm이상~25mm이하로 변경하였다.
- 또한, 등급판정 적용조건 중 수돼지 도체의 경우 거세하지 않은 수돼지 도체는 도체의 A등급, B등급, C등급은 해당등급에서 1개등급을 낮추어 최종등급으로 판정하도록 변경하였다.
- 그리고 E등급에서 2가지 기준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바베큐, 제수용 등 특수목적용으로 이등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것, 비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써 지방이 적고 고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E등급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 돼지도체의 등급판정기준 개정 대비표

구분	현행				구분	개정			
	축정		방법			박피도체		탕박도체	
	박피인력측정 (kg)	등지방두께 (mm)	탕박인력측정 (kg)	등지방두께 (mm)		도체중량 (kg)	등지방두께 (mm)	도체중량 (kg)	등지방두께 (mm)
A 등급	이상 미만 64-72 72-81	이상 미만 9-19 9-21	이상 미만 71-79 79-89	이상 미만 14-24 14-26	A 등급	이상 이하 69-82	이상 이하 10-20	이상 이하 76-90	이상 이하 15-25
B 등급	60-64	7-22	67-71	12-27	B 등급	63-68	8-23	70-75	13-28
	64-71	7-9	71-78	12-14		69-82	8-9	76-90	13-14
	64-71	19-22	71-78	24-27		69-82	21-23	76-90	26-28
	71-72	7-9	78-79	12-14					
	71-72	19-24	78-79	24-29					
	72-81	7-9	79-89	12-14					
	72-81	21-24	79-89	26-29					
	81-84	7-24	89-92	12-29					
C 등급	55-60	5-25	61-67	10-30	C 등급	58-62	6-26	64-69	11-31
	60-70	5-7	67-77	10-12		63-85	6-7	70-93	11-12
	60-70	22-25	67-77	27-30					
	70-71	5-7	77-78	10-12					
	70-71	22-27	77-78	27-32					
	71-84	5-7	78-92	10-12					
	71-84	24-27	78-92	29-32					
	84-87	5-27	92-95	10-32		86-88	6-26	94-96	11-31
D 등급	A,B,C,E에 속하지 않는 것		과 동	D 등급	A,B,C,E에 속하지 않는 것		과 동		
E 등급	별도로 정하지 않음		과 동	E 등급	별도로 정하지 않음		과 동		

□ 돼지도체 E등급 개정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1) <u>웅취(雄臭)</u> 등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1) 수돼지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 자구수정
2) 위생검사에서 많이 제거된 것	2) 도축검사과정에서 병변등으로 많이 제거된 것	○ 자구수정
3) 현저하게 오염된 것	3) (과 동)	
4) 극히 왜소하다고 인정되는 것	4) 체중이 아주 적다고 인정되는 것	○ 자구수정
5) 경산모돈, 종모돈(種牡豚)	5)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 씨 수돼지(종모돈)	○ 자구수정
6) 황돈 또는 지방질이 특히 나쁜 것	6) 지방이 황색이거나 연지방으로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것	○ 자구수정
(신설)	7) 비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지방이 적고 고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	○ 소비자의 구매기피에 따른 현실반영
(신설)	8) <u>바베큐, 제수용 등 특수목적용으로 이등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것</u>	○ 적용조건의 항목을 수정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 (농림부 고시 1998-28호, '98. 6.1)

□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급화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서울특별시	전지역	'95. 2.6	'95. 2.6
부산광역시	전지역	'95. 6.1	'95. 2.6
대구광역시	전지역	'95.10.1	'95. 6.1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전지역	'95.10.1	'95. 6.1
광주광역시	전지역	'95.10.1	'95. 6.1
대전광역시	전지역	'95.10.1	'95. 6.1
울산광역시	전지역	'97.7.15	'97.10.1
경기도 (31개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96. 7.1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96. 7.1	'99. 1.1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오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양주군, 여주군, 양평군 부천시	'98. 7.1	-
강원도 (5개시군)	원주시, 횡성군, 철원군	'96. 7.1	-
	춘천시	'96. 7.1	'99. 1.1
	강릉시	'99. 1.1	-
충청북도 (11개시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96. 7.1	-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98. 7.1	-
	청주시	'96. 7.1	'99. 1. 1
	전안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96. 7.1	-
충청남도 (15개시군)	보령시, 금산군, 당진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98. 7.1	-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96. 7.1	-

등급화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전라북도	진주시	'96. 7.1	'99. 1. 1
	정읍시(읍, 면지역 제외)	'96. 7.1	-
	정읍시의 읍, 면지역	'98. 7.1	-
	부안군 고창군	'97. 8.1 '99. 1.1	-
전라남도 (23개시군)	나주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장흥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해남군	'96. 7.1	-
	목포시	'97.1.30	-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노화도, 소완도, 보길도 제외)	'98. 7.1	-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경산시, 문경시, 고령군	'96. 7.1	-
경상북도 (21개시군)	예천군	'98. 7.1	-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99. 1.1	-
	포항시	'99. 1.1	'99. 1.1
	경상남도 (20개시군)	진주시, 양산시, 진해시, 창녕군, 고성군	'96. 7.1
김해시	'96. 7.1	'95. 6.1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천군	'99. 1.1	-	
마산시	'96. 7.1	'99. 1.1	
합양군	'98. 7.1	-	
창원시	'99. 1.1	'99. 1.1	
제주도 (4개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95. 2.6	'95. 2.6

주) 신규고시지역